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주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설치〉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37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전주가정법원 본원 및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2
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성윤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25.

3. 회 부 일 : 2024.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은 가족 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가사·소년사건 전문법원임. 전북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2021년 1,587건, 2022년 1,563건, 2023년 1,436건의 가사소송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월등히 많은 수요임. 별도로 설치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사·소년사건 등에 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III. 검토의견

1. 전주가정법원 본원 및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가. 개정안의 내용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이 규정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 개정안은 이 중 [별표 1]을 개정하여 전주가정법원 본원 및 군산·정읍·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고, [별표 3]을 개정하여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규정을 조정하며, [별표 5]를 개정하여 전

주가정법원 본원 및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의 관할구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및 개정내용>

개정대상	개정내용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전주가정법원 본원 및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 조정
[별표 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전주가정법원 본원 및 군산·정읍·남원지원 관할구역 규정

- 개정안에 따른 신설 전주가정법원 본원 및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일은 2029년 3월 1일로 규정됨.

<신설 법원의 소재지, 관할구역 및 시행일>

법원명	소재지	관할구역	시행일
전주가정법원	전주시	전주시·김제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전북특별자치도	2029년 3월 1일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군산시	군산시·익산시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정읍시	정읍시·부안군·고창군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	남원시	남원시·장수군·순창군	

나. 검토의견

-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처리하는 전문법원임.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등의 가사사건과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행하는 소년보호사건을 주로 담당하나, 가정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처분이나 피해자 보호명령을 행하는 가정보호사건이나 아동보호사건도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으로 1963년 10월 1일 설치되었으며, 2011년 4월 11일 부산가정법원, 2012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가정법원, 2016년 3월 1일 인천가정법원, 2018년 3월 1일 울산가정법원, 2019년 3월 1일 수원가정법원이 각각 설치되었으며, 2025년 3월 1일에는 창원가정법원이 개원할 예정임.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으로,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현재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주시 등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전주가정법원 본원 및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려는 것임.

1) 법원 홈페이지, 사법부 소개>>법원의 조직>>전문법원, <https://www.scourt.go.kr/judiciary/organization/specialized/index.html>, 2024. 8. 18. 최종 확인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가사사건 등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은 같은 지역에 소재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주민들의 가사사건 및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사법 접근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의 처리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최근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가정법원을 확대 설치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주민들에게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가정법원을 추가 설치할 것인지 여부 및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을 어디에 얼마나 더 설치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경기 북부지역, 충청북도 지역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법원의 조직·인력·시설 등 사법자원의 활용 및 배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현재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전주지방법원 외에도 의정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

법원(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3월 창원가정법원이 개원 예정이므로 제외)이 가정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관할 사건 수(가사사건 등 가정법원 관할 기준)를 살펴보면, 전주지방법원(5,197건)에 비해 의정부지방법원(8,223건)의 사건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 가정법원 사건 수 현황>

(단위: 건, 2023. 12. 31. 기준)

연번	법원명	합계	가사 단독	가사 합의	가사 항소	가사 비송	가정 보호	소년 보호
1	서울가정법원	35,131	6,592	982	360	18,288	3,075	5,834
2	수원가정법원	18,664	2,247	298	395	5,456	2,172	8,096
3	인천가정법원	15,748	2,242	97	216	5,981	1,471	5,741
4	부산가정법원	13,644	2,325	195	164	7,146	1,139	2,675
5	대구가정법원	13,298	1,937	122	218	5,219	1,223	4,579
6	대전가정법원	10,362	1,278	128	182	3,189	712	4,873
7	광주가정법원	9,658	1,222	69	147	3,326	708	4,186
8	의정부지방법원	8,223	853	56	166	2,808	392	3,948
9	울산가정법원	5,962	1,086	111	41	2,535	439	1,750
10	창원가정법원	5,917	885	77	170	1,967	369	2,449
11	전주지방법원	5,197	705	28	82	1,696	244	2,442
12	청주지방법원	4,589	795	43	70	2,009	211	1,461
13	제주지방법원	3,968	592	14	80	1,832	600	850
14	춘천지방법원	2,659	302	31	47	931	138	1,210

주) 셀 음영은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 창원가정법원은 2025년 3월 설치 예정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266억 5,000만원(연평균 53억 3,000만원)으로 추정됨. 이는 개정안에 따라 전주가정법원 본원만 청사를 신축하고, 나머지 지원들의 경우 기존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사용하며, 판사 정원은 변동 없이 공무원만 11명 순증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임(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참조).

다.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가사사건 등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법원을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주는 의정부, 청주, 춘천, 제주와 함께 아직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못한 지역으로서, 가사·소년 등 사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나,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 전국 가사사건 관할의 합리적 배분,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부지 및 예산, 독립 청사 확보 가능성,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못한 타 지역(의정부, 청주 등)과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

- 개정안에 따라 전주가정법원과 전주가정법원 소속으로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20억 600만원, 2031년 8억 2,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66억 5,000만원(연평균 53억 3,000만원)으로 추계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계	연평균
전주가정법원 등의 신설 (안 [별표 1] 등)	12,006	12,296	717	808	823	26,650	5,330

주: 1. 전주가정법원 등의 신설(안 [별표1] 등)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현행 8개 가정법원의 현황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9년의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는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가정법원 소속 군산지원·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은 현행 ‘전주지방법원’ 소속 군산지원·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서 가사사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승계하고 기존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전주가정법원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공사비와 부대경비, 11명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9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부터 2년 동안 청사를 신축하고, 2029년부터 법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